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강림교회 기독교사회복지재단 정관 제 9장의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규정에 의하여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 설치 목적에 합당한 운영을 위해,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운영위원회 운영 내규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
- 3.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기타 강림새날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센터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구분과 자격)①위원의 구분은 전주강림교회 기독교사회복지재단위원, 전주강림교회 제직위원, 지역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어린이 보육 및 교육에 식견이 있는 자 이어야한다.

②재단이사장, 재단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①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소정의 후원회비를 부담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6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 내외로 하되, 전주강림교회 사회복지재단위원 4명, 제직위원 5명, 지역위원 약간명과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선정)운영위원은 전주강림교회 사회복지재단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8조(보궐 선정)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정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9조(임원)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를 두되 위원장은 본 재단 이사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재단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0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센터장의 요구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1조(의안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센터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교육계획, 예산안 및 결산안은 센터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등)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센터장이 서명한다.

②회의 결과를 위원장은 다음 달 전주강림교회 기독교사회복지재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시행의 의무)센터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14조(규정의 제정·개정)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은 복지재단의 정관 제4장 센터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제안)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센터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6조(규정의 개정)운영위원회의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결의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조례에 준한다.